

중소건설업 지원·육성 전략: 전문기업 인증제도 도입 방안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책임연구원
(hongsj@ricon.re.kr)

- I. 서론
- II. 중소기업의 의의 및 현황
- III. 중소기업 관련 환경 변화와 지원제도
- IV. 중소기업의 전문기업 인증제도 방향 및 활성화 방안
- V. 결론



I. 서론

중소건설업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천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은 건설업 가운데 절대 다수(종합: 98.1%, 전문: 9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날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ESG 이슈로 인하여 전문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전문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건설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전문화·사회적 책임을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전문기업 인증제도 방향, 중소기업 전문기업 인증제도 유사 사례 및 평가, 중소기업의 전문기업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중소기업의 의의 및 현황

1. 중소기업의 의의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하며,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

한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2021년 현재 종합건설업은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의 5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 습식·방수, 도장, 비계·구조물해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29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은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최대 120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은 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또한, 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최대 1,500억원 이하이어야 한다.¹⁾

둘째,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이어야 한다.

셋째, 기업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인지에 따라 판단되며, 평균매출액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건설업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천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건설업 현황

종합건설업은 2019년 기준 11,367개이며, 2017년 이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매출액 기준(1,000억원 미만)에 따른 중소건설업은 2019년 기준 98.1%(11,152개)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종합건설업 내 중소건설업 비중

(단위: 개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종합 건설업수	10,467	10,177	9,941	9,790	9,726	9,889	9,766	10,619	11,039	11,367
중소 건설업수 (%)	10,333 (98.7%)	10,040 (98.7%)	9,808 (98.7%)	9,640 (98.5%)	9,570 (98.4%)	9,726 (98.4%)	9,579 (98.1%)	10,409 (98.0%)	10,818 (98.0%)	11,152 (98.1%)

1) 건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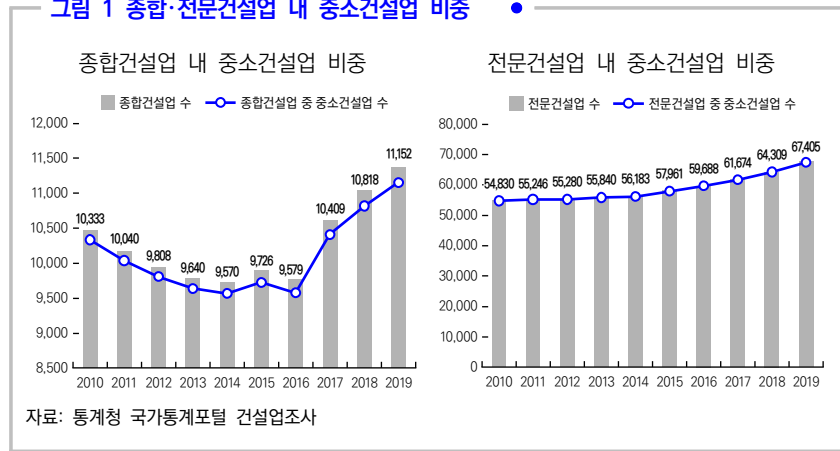
전문건설업은 2019년 기준 67,482개이며,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²⁾ 이 가운데 매출액 기준(1,000억원 미만)에 따른 중소기업은 99.9%(67,405개)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전문건설업 내 중소기업 비중

(단위: 개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문 건설업수	54,863	55,292	55,308	55,885	56,224	58,008	59,742	61,757	64,382	67,482
중소 건설업수 (%)	54,830 (99.9%)	55,246 (99.9%)	55,280 (99.9%)	55,840 (99.9%)	56,183 (99.9%)	57,961 (99.9%)	59,688 (99.9%)	61,674 (99.9%)	64,309 (99.9%)	67,405 (99.9%)

그림 1 종합·전문건설업 내 중소기업 비중



III. 중소기업 관련 환경 변화와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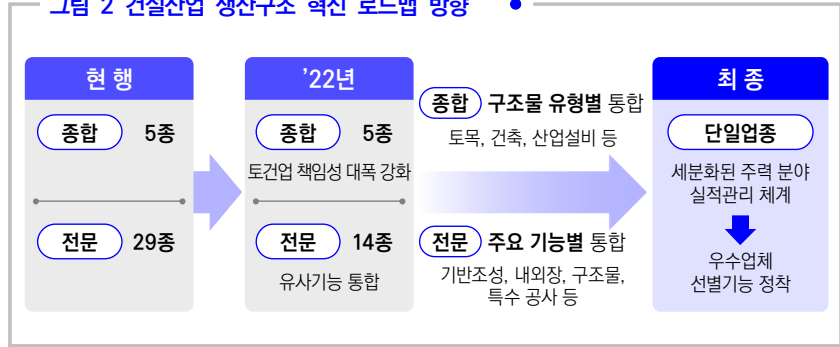
1. 중소기업 관련 환경 변화

(1)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시행

2018. 11. 7. 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³⁾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건설업조사: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전문직별 공사업을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건설장비 운영업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전문건설업은 전문직별 공사업 가운데 전기 및 통신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을 제외한 기준이다.

그림 2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방향



국회는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업역 규제 폐지’, ‘등록기준 정비’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였고, 2021. 1. 1.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업종체계 개편’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업 간 공정경쟁을 위하여 29개의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하여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종합공사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중소기업은 업역규제 폐지로 인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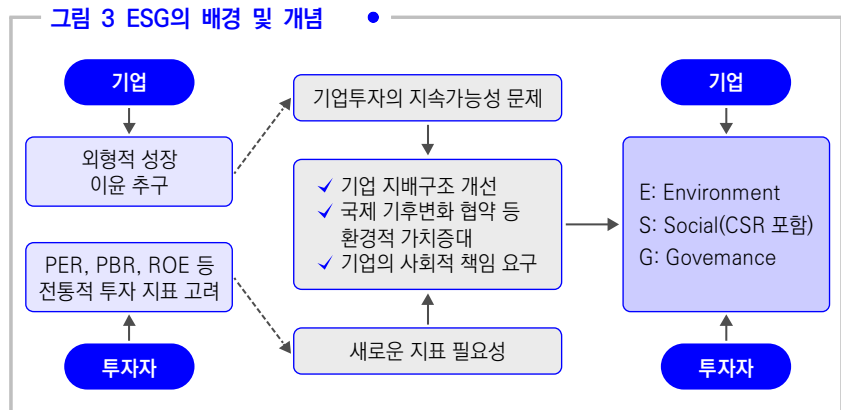
(2) ESG 이슈

ESG는 기업의 非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ESG는 1970년대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개념에서 출발하여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자 UN에서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위하여 국제적 협약(UN Global Compact)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CSR관련 국제표준(ISO26000)을

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 2018. 11. 17. 보도자료.

제정하였다.⁴⁾ 이후 2006년 UN UNEP FI(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에서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 시 우선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 제안하면서 국제사회 사회책임투자 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으로 확대되었다.⁵⁾ 최근에는 국제 기후변화 협약, 특히 파리협정(Paris COP21)과 제21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2015),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환경요인(E)이 강조되면서,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 측정을 위한 지표가 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자금의 원천이 되어 2020년 상반기 기준 세계 ESG 투자 자산은 40조 5,000억달러(약 5경원)에 이르고 있다.⁶⁾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국민연금의 스투어드십 코드 채택, 2019년 지속가능성 및 ESG요소를 고려한 기금 운용원칙 개정, 국내 ESG펀드 및 ESG채권 발행,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의 일환인 그린 뉴딜 정책의 부상으로 ESG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설업은 ESG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설업의 ESG 참여·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비용 부담이 큰 친환경(E), 개별기업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배구조(G) 보다는 상대적으로 실행에 부담이 적은 사회적 책임(S)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4) 오상희·이승태, “ESG 평가요소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 전산회계학회, 2019, 206면
 5) 민재형·김범석, “기업의 ESG 노력은 지속가능경영의 당위적 명제인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른 비재무적 책임 향상 노력의 차별적 효과”, 경영과학 제36권 제1호, 한국경영과학회, 2019, 18면.
 6) 이윤선·문혁·이태식,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건설기업 ESG 활동 및 성과 사례”,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21, 107면.

2.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5장에서는 ‘경영합리화와 중소기업사업자 지원’의 제명 하에 중소기업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 노력’(법 제45조),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책 수립·시행’(법 제46조)의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용은 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이하 ‘도급하한제’)이다. 즉, 공공공사에 한하여 시공능력평가 3% 이내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은 다음과 같이 1건 공사의 공사에 정금액 하한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건설공사의 하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0호).

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하한제의 내용

대상 건설사업자	하한금액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자 	200억원	시공능력평가액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시공능력평가액이 41,0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자 	18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공사업 - 시공능력평가액이 1,8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자 	20억원	

공공공사의 대기업 공사금액 도급하한제는 1984. 12. 31. (구)「건설업법」 전부개정 당시 도입된 제도이다.

(구)「건설업법시행령」

제25조 (도급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의 하한은 도급한도액이 일정액이상인 일반건설업자에 한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도급금액의 하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으로 이를 결정한다.

③ 제24조의 규정은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렇듯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약 40년 가까이 일부 대기업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하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IV. 중소기업의 전문기업 인증제도 방향 및 활성화 방안

1. 중소기업의 전문기업 인증제도 방향

(1) 중소기업 전문기업 인증제도 개념 및 필요성

전문기업 인증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전문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증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중소기업은 입·낙찰 이후 공사관리 및 하도급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폐이퍼컴퍼니 양산, 부실시공 등의 사회적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 가운데 절대 다수(종합: 98.1%, 전문: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업역규제 폐지, ESG 이슈로 인하여 전문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특정 사업 또는 공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역사회 공헌의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전문기업으로 인증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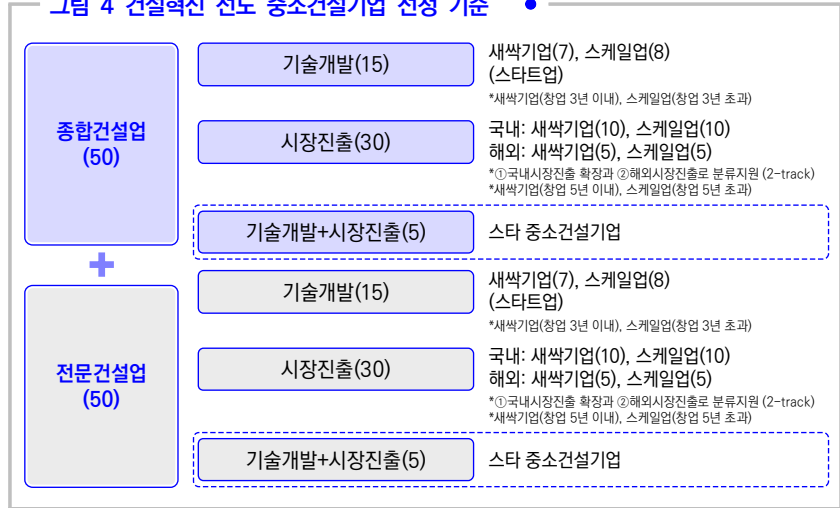
(2) 중소기업 전문기업 인증제도 유사 사례 및 평가

① 건설혁신 선도 중소기업 선정

2020. 10. 2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였다. 건설혁신 선도 중소기업은 선정된 중소기업이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은 종합·전문 건설업 구분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30%), 시장진출(60%),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10%)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건설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림 4 건설혁신 선도 중소기업 선정 기준



선정 대상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매출실적 및 기술인력 고용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회생·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보증부담완화(수수료 10%↓), 저리자금 대출 확대(20%↑)가 공통으로 지원된다. 또한, 분야별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		지원 내용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지원('21년 말) •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시장진출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협력평가 가점(3점) • 고용평가 가점(0.5점) •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 시장개척 지원(해외건설협회) • 컨설팅(해외건설협회·로펌)

다만, '건설혁신 선도 중소기업 선정'은 기술개발, 시장진출을 분야로 하면서도 선정 기준을 매출실적과 기술인력 고용비율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알에비이엔씨, 토옹이엔씨 등 20개 중소기업이 선정되었는바,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분야 발굴, 지속가능성 등의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따라서 ‘건설혁신 선도 중소기업 선정’ 사례를 중소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②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7. 1. 3.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화되었는데,⁷⁾ 동법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2호).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에 따라 이루어진다(법 제7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2021년 5월 기준 총 75차에 걸쳐 3,400개 기업이 인증되었고, 현재 2,908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⁸⁾ 이 가운데 건설업은 빗고을건설(전문: 시설물유지관리업), 노아건설(전문: 상하수도설비), 어반소사이어티(전문: 실내건축) 등 약 50개로 추정되며, 중소기업법에 해당된다.

다만,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한 편이다.

이에 따라 예비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역형

7)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8)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으로 구분된다.

예비사회적 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구분된다.

표 4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규칙	지침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규약 구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형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구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그 결과 중앙부처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총 158개 기업을 지정하였고, 17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였다.⁹⁾

그러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도시재생’ 분야로 국한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과 달리 상법상 회사가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¹⁰⁾ 오늘날 도시재생은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 주도 방식(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포함)으로 추진되면서 사업 속도가 느리고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도시재생 참여·확대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된 가운데, 물리적 재생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시공전문성 뿐만 아니라 지역기반의 특징, 각 시·도회별 지원 조직을 갖춘 중소기업의 참여·확대방안이 제시되었다.¹¹⁾

따라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를 도시재생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우수사례 선정-지역브랜드 창출·청년 일자리·시공교육 등 11개 우수사례 성과 확산-”, 2020. 12. 31. 보도자료.

10) 오늘날 사회적 기업은 상법상 회사가 62.1%, 민법상 법인 10.1%, 사회적 허봉조합 6.4%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11) 자세한 내용은 홍성진 외, “중소건설업과 함께 하는 지역·주민밀착형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모델 연구” LH공사 용역 보고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

2. 중소기업의 전문기업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1) 전문기업 인증 절차 및 인센티브

중소건설업의 전문기업 인증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증할 필요가 있다. 인증 주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가칭) 전문기업 인증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 요건은 ① 취약계층 또는 청년 고용, ② 신기술 개발, ③ 국가 정책 사업에 필요한 교육 이수, ④ 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공헌, ⑤ 기타 중소기업의 전문성 또는 사회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가칭) 전문기업 인증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증 혜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을 보유하고 등록하기 때문에 해당 공사분야의 전문성은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입찰에 있어 자격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전문기업 인증은 입찰에 있어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전문기업 인증 적용 분야 설정

중소건설업의 전문기업 인증은 분야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도시재생 분야로 국한하고 있으나, 그린리모델링, 생활SOC, 임대주택 등 시설물별로 전문기업을 인증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단순 공사 수주가 아닌 정책사업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전문기업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혁신 선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ESG와 같이 경영 측면에서 전문기업을 인증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취약계층 또는 청년 고용, 신기술 개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문기업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3) 전문기업 인증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중소건설업의 전문기업 인증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명문으로 중소기업의 전문기업 인증을 법제화하고,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연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문기업 인증 법제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문기업 인증 방안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7조의2(중소건설사업자의 전문기업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전문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업 인증은 전문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약계층 또는 청년을 고용한 경우 2. 신기술 또는 특허를 개발한 경우 3. 국가 정책 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4. 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경우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전문성 또는 사회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전문기업 인증위원회가 전문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자에게 기술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전문기업 인증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전문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증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건설업 가운데 절대 다수(종합: 98.1%, 전문: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업역규제 폐지, ESG 이슈로 인하여 전문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특정 사업 또는 공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역사회 공헌의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전문기업으로 인증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전문기업 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전문기업 인증 주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가칭) 전문기업 인증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 요건은 ① 취약계층 또는 청년 고용, ② 신기술 개발, ③ 국가 정책 사업에 필요한 교육 이수, ④ 지역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공헌, ⑤ 기타 중소기업의 전문성 또는 사회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가칭) 전문기업 인증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증 혜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을 보유하고 등록하기 때문에 해당 공사분야의 전문성은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입찰에 있어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기업 인증 분야는 그린리모델링, 생활SOC, 임대주택 등 시설물별로 전문기업을 인증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단순 공사 수주가 아닌 정책사업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전문기업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혁신 선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ESG와 같이 경영 측면에서 전문기업을 인증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취약계층 또는 청년 고용, 신기술 개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문기업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기업 인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명문으로 중소기업의 전문기업 인증을 법제화하고,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연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우수사례 선정-지역브랜드 창출·청년 일자리·시공교육 등 11개 우수사례 성과 확산-”, 2020. 12. 31. 보도자료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 2018. 11. 17. 보도자료
3. 민재형·김범석, “기업의 ESG 노력은 지소가능경영의 당위적 명제인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른 비재무적 책임 향상 노력의 차별적 효과”, 경영과학 제36권 제1호, 한국경영과학회, 2019
4. 오상희·이승태, “ESG 평가요소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전산회계학회, 2019
5. 이윤선·문혁·이태식,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건설기업 ESG 활동 및 성과 사례”,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21
6. 홍성진 외, “중소건설업과 함께 하는 지역·주민밀착형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모델 연구” LH공사 용역 보고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